

학 칙

제정 1992. 3. 1. (규정 제 2호)	개정 1993. 3. 1. (규정 제 13호)
개정 1993. 8. 21. (규정 제 22호)	개정 1994. 3. 1. (규정 제 24호)
개정 1995. 3. 1. (규정 제 28호)	개정 1995. 9. 1. (규정 제 36호)
개정 1995. 11. 1. (규정 제 39호)	개정 1996. 9. 4. (규정 제 57호)
개정 1997. 12. 26. (규정 제 73호)	개정 1998. 6. 1. (규정 제 80호)
개정 1998. 11. 5. (규정 제 82호)	개정 1999. 3. 12. (규정 제 84호)
개정 1999. 4. 14. (규정 제 85호)	개정 2000. 3. 1. (규정 제 87호)
개정 2000. 6. 13. (규정 제 89호)	개정 2000. 10. 9. (규정 제 90호)
개정 2001. 4. 1. (규정 제 92호)	개정 2002. 9. 6. (규정 제 132호)
개정 2003. 6. 26. (규정 제 156호)	개정 2003. 11. 3. (규정 제 172호)
개정 2004. 3. 9. (규정 제 173호)	개정 2004. 3. 25. (규정 제 175호)
개정 2004. 7. 2. (규정 제 176호)	개정 2004. 7. 29. (규정 제 177호)
개정 2005. 7. 27. (규정 제 217호)	개정 2008. 9. 5. (규정 제 243호)
개정 2009. 2. 2. (규정 제 252호)	개정 2009. 3. 1. (규정 제 319호)
개정 2009. 11. 2. (규정 제 362호)	개정 2010. 3. 1. (규정 제 436호)
개정 2010. 12. 27. (규정 제 449호)	개정 2011. 3. 31. (규정 제 457호)
개정 2011. 8. 18. (규정 제 460호)	개정 2011. 12. 19. (규정 제 464호)
개정 2012. 2. 1. (규정 제 471호)	개정 2012. 5. 11. (규정 제 479호)
개정 2012. 9. 5. (규정 제 520호)	개정 2013. 5. 21. (규정 제 544호)
개정 2013. 12. 31. (규정 제 565호)	개정 2014. 6. 02. (규정 제 579호)
개정 2014. 08. 28. (규정 제 591호)	개정 2014. 12. 12. (규정 제 603호)
개정 2015. 02. 27. (규정 제 661호)	개정 2015. 03. 01. (규정 제 662호)
개정 2015. 09. 01. (규정 제 785호)	개정 2015. 12. 01. (규정 제 809호)
개정 2016. 03. 01. (규정 제 812호)	개정 2016. 12. 31. (규정 제 82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대학교는 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03.01.>

제 3 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 대경로 105길 19에 둔다.<개정 2012.02.01>

제 4 조(설치 계열·학부·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학부·학

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계열·학부·학과·전공의 설치 및 폐지 그리고 입학정원이 변경될 경우는 당해 연도 교육부에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한다.<개정 2010.03.01.><개정 2012.02.01><교육부 명칭변경 2013.04.08><개정 2013.05.21><개정 2014.06.02><개정 2015.09.01.><개정 2016.12.31>

- 제 4 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5 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는 4년, 방사선과,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병원행정의료정보과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3.01.><개정 2012.02.01><개정 2013.05.21.><개정 2014.06.02.>
-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1/4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 졸업 할 수 있다.<신설 2012.02.01>

- 제 5 조의 2(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 ② 종전에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4.06.02.>

- 제 6 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 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제2학기 수업을 학기 개시일전 2주 이내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해외수업학기제, 외국인학생 수업학기제(어학수업포함) 또는 계절학기 수업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교육부 명령 2013.04.08>

제 10 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계방학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 10월 2일

4. 일요일 <개정 2013.12.31>

5. 국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10조의 2(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교육부 명령 2013.04.08>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1 조(입학시기)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 12 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 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총장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4 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

③ 신입생 선발은 계열별로 선발할 수 있으며 계열별로 선발된 학생은 당해 2학기 시작 전까지 세부전공을 결정한다.

제 14 조의 2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1.>

제 14 조의 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9.05>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9.05.> <개정 2016.12.31>

제 15 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15 조의2(2중 학적의 금지) 본 대학교 학생으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 16 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인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의 편입학은 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2.01>

② 편입학은 각 학과(계열)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계열)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6 조의2(전과) ①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과 학

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는 불허한다.<개정 2016.12.31>

② 전과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계 학과(계열)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학과장(계열부장)에 의해서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③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및 전출과 기준으로 각각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31>

④ 교원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는 그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보건의료인양성 관련학과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12.31>

⑤ 학과 통폐합 또는 폐과된 계열·학부·전공·학과 학생의 전과는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별도로 전과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6.12.31>

⑥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1>

제 17 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학생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제 18 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19 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인 경우 1년을, 군휴학인 경우 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을 휴학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휴학이나 휴학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중 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군휴학자는 직무능력평가 1을 수행하고 수업일수 1/2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⑥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및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02.01>

제 19조의 2(복학) ① 제 19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조(자진퇴학)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의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21 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대상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의 1/4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2.02.01>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 삭제 -<삭제 2012.02.01>

4. - 삭제 -<삭제 2012.02.01>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6 장 교과 및 수업<개정 2012.02.01>

제 22 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과목 10~20%, 전공과목 80~90%로 하고 전공과목의 시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30%이상, 그 외 계열 학과는 50% 이상을 실현, 실습으로 과한다. 단,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이수학점 편성지침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02.01> <개정 2014.08.27>

②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기초, 필수,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학과(계열)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 <개정 2016.03.01.>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과의 필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개정 2012.05.11>

④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산업체에서 현장연수(Internship)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

⑤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학점은 재학기간 통산 3학점 이내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02.01.>

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2.31>

⑦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6.12.31>

⑧ 첨단정보통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기법을 통한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e-Learning)’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2.31>

제 22 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조(비정규 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계열·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매 학년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교육부 명칭변경 2013.04.08>

제 23 조의 2(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 ① 본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열·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원양성 및 보건의료인력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01.>

②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을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 연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하며, 대학의 정규과정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한다. 또한, 시간제 등록생만을 위한 별도반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정한다. <개정 2015.12.01.>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인정되는 학점이 18학점 이상 되고, 본 대학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칙 제24조 제2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는 당해 소속계열이나 학과의 전공과목 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⑤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1.>

⑦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01.>

⑧ 기타 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의 3(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계열·학과와 관련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2.01><교육부 명칭변경 2013.04.08>

③ 비학위전공심화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

④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2.01>

⑤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02.01>

제 23 조의 4(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대학에서 50학점(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02.01>

제 23 조의 5(군복무중 학점인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자가 취득한 학점과 고등교육법 제23조 2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이내 연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3 조의 6(선행학습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 및 선행학습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자격기본법 제2조 4호(국가자격)에 해당하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실기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

과 교육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기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선행학습 인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인정위원회를 둔다.

⑤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선행학습의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인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4.06.02.>

제 24 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는 1학기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6.12.3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는 140 학점으로 한다.<개정 2012.02.01>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8.18>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 삭제 -<삭제 2012.02.01>

⑥ 현장실습에 준하는 연수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봉사학점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의 2(교양과목 학점인정) 신·편입학자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 한 교양과목 학점은 기 이수한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이 우리대학의 교양과목과 내용이 동일 혹은 유사한 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2.01.> <개정 2016.12.31>

제 24 조의 3(평생직업교육대학 학점 인정) 우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개설된 학점인정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과 학과 지정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절차에 의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범위는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이수한 총 2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16.03.01>

제 25 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전일제수업, 원격수업 (사이버강좌), 방송통신수업, 온오프 혼합수업(블랜디드, 플립러닝 등), 계절수

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개정 2012.02.01.> <개정 2013.12.31.><개정 2016.12.31>

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개정 2012.02.01>

③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2.02.01.> <개정 2016.12.31>

④ 학사운영상 소속 학과(전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 <삭제 2012.02.01.><개정 2016.12.31>

제 25 조의 2(계열,학부,학과,전공의 통폐합 및 폐과)

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구조조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신입생 모집단위를 통합 및 폐과할 수 있다. <개설 2016.12.31.>

② 계열, 학부, 학과, 전공의 통합 및 폐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설 2016.12.31.>

③ 폐과된 계열, 학부, 학과, 전공의 복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학과 및 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설 2016.12.31.>

제 25 조의 3(타교생의 수학) 국내 · 외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협약사항 등에 의한다.

제 25 조의 4(집중수업) 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2.02.01.><신설 2016.12.31>

제 25 조의 5(원격수업) ① 본 대학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사이버강좌)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사이버강좌를 학생이 수강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강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석강의(Off-Line강의)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③ 사이버강좌 수강에 의한 학점인정은 본 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사이버강좌를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이 본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교류협약 등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26 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를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3.0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직무능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능력평가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직무능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평가를 따로 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제 27 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직무능력평가 점수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S를 급제로 한다.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점 이하	0
S	불계	

- ③ 추가평가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 ④ 성적 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의 2(학점 및 교과목이수인정) 국내·외 교류교육(가상교육강좌 포함)을 위하여 교환학생, 외국인학생 및 연수과정 등에 대한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진급인원) 2학년, 3학년,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

제 29 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30 조(경고) 성적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 조(졸업 및 수료) ①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02.01>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수료학점은 아래와 같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0.00>

학년 \ 과정	2년 과정		3년 과정		4년 과정	
	수료학점	졸업학점	수료학점	졸업학점	수료학점	졸업학점
1	40	-	40	-	40	-
2	80	80	80	-	80	-
3	-	-	120	120	120	
4					140	140

④ 학점미달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 31 조의 2(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 32 조(유급) === 삭 제 ==

제 8 장 학생활동

제 33 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자퇴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 34 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 37 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7 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② 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80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8호]’에 의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 및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여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7.>
- ④ 총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19>

제 38 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 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 적, 개회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39 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 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물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징계 제적 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 41 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2 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자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을 수 있다.

제 44 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44 조의 2(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4 조의 3(성희롱 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호산교육재단 정관 및 인사 규정,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③ 이 학칙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31.>

제 44 조의 4(성희롱 예방교육) ① 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신설 2016.12.31>

② 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2.31>

제 44 조의 5(피해자 구제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 피해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1>

1. 성희롱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방지 및 구제 방안 마련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의한 징계는 적절한 조치 강구
- ② 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여도 아니 된다.<신설 2016.12.31.>

제 44 조의 6(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2.31>

제 10 장 납입금

제 45 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외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교육부 명칭변경 2013.04.08>

③ 납부한 납입금중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46 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6 조의 2(체납자 조치) 총장은 납입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 46 조의 3(등록금 산정) ① 등록금인상을 및 등록금책정 등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대학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부모 및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19>

1. 교직원 4명<개정 2011.12.19>

2. 학생 3명<개정 2011.12.19>

3. 관련전문가 1명

4. - 삭제 -<개정 2011.12.19>

5. - 삭제 -<개정 2011.12.19>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④ 총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란 한다)을 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 12. 27.>

제 11 장 장학금

제 47 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B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C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신입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재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자퇴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개정 2012.05.11.>

제 48 조(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5.11>

제 49 조(교수회)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05.11>

제 49 조의 2(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5.11><조문개정 2013.05.21.>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입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적교수 1/4 이상이 서면 요청으로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9 조의 3(각종위원회) 총장의 자문과 부서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2.05.11>

제 13 장 직 제

제 50 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 ② 본 대학교에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③ 본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사무직원(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둔다.
-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등을 각각 임면 또는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4.06.02>

1. 겸임교수 :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수 :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명예교수 :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 대학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학술분야 등 특정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개정 2014.06.02>
4. 석좌교수 :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있는 자, 학술분야 등 특정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개정 2014.06.02>r
5.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개정 2014.06.02>

[전문개정 2012.05.11]

제 50 조의 2(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51 조(직제) ① 본 대학교에 비서실, 교무처, 교육지원처, 기획처, 예산처, 입학·취업처, 평생직업교육본부, 평생직업교육처 및 산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4.12.12.><개정 2015.09.01.>

② 각 실·처에 실·처장을 보하고 실·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정리하고 실·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실·처의 사무분장을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보하고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한다.

⑤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속기관

제 52 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교육지원처(전산지원팀)로 통합 <개정 2014.12.12.>

3. 정암학사(학생생활관) <개정 2014.12.12.><개정 2015.09.01.>

4. 국제교류센터 <개정 2014.12.12.><개정 2015.09.01.>

5. -삭제- 입학·취업처 산학/취업팀 산하로 조직 개편 <개정 2014.12.12.>

6. 보건실

7. -삭제- 평생직업교육본부 평생직업교육처 산하로 조직 개편 <개정 2015.09.01.>

8. -삭제- 창업지원단 산하로 조직 개편 <개정 2015.09.01.>

9. 대학언론사(학보사, 교육방송국, 출판부)

<개정 2015.09.01.>

10. -삭제- <개정 2015.09.01.>

11. -삭제- 교육지원처 산하 전산지원팀으로 조직 개편 <개정 2014.12.12.>

12. -삭제- <개정 2014.12.12.>

13. -삭제- 교무처 교무/학생팀 산하로 조직 개편 <개정 2014.12.12.>

14. 학생생활상담센터 <개정 2013.05.21.> <개정 2014.06.02.>
 <개정 2014.12.12.> <개정 2015.09.01.>
15. -삭제- <개정 2013.05.21.>
16.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정 2013.05.21.><개정 2014.12.12.><개정 2015.09.01.>
17. NCS지원실 <신설 2014.06.02.><개정 2014.12.12.><개정 2015.09.01.>
18. 교육기부센터 <신설 2014.12.12.>
19.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센터 <신설 2015.09.01.>
20.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센터 <신설 2015.09.01.>
21. 기초학습능력지원센터 <신설 2015.09.01.>
22. BLS센터 <신설 2015.09.01.>
23. 교수학습지원센터 <신설 2014.06.02.>
24. 주문식교육개발센터 <신설 2016.03.01.>
25. 취·창업지원센터 <신설 2016.03.01.>
2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2016.03.01.>
27. 한국어학당 <신설 2016.03.01.>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 52 조의2(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1. 학생생활연구소 <삭제 2014.06.02.> <개정 2015.09.01.>
 2. 건설기술연구소
 3. 컴퓨터응용기술연구소
- ②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 15 장 보 칙

제 53 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4 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

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5 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6 조(학칙 제·개정) 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1.><개정 2012.05.11>

②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장 등은 제·개정안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개정 2016.03.01.>

2. 교무처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15일 이상 본 대학교 교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개정 2016.03.01.>

3. 본 대학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05.21.>

4. 제·개정안에 대하여 대학발전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3.05.21.> [전문개정 2012.05.11]

제 56 조의 2(의견제출 및 처리) - 삭제 -<개정 2012.05.11>

제 56 조의 3(심의 및 공포) - 삭제 -<개정 2012.05.11>

제 57 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 이라함은 본 대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교환학생, 외국인복수학위생 등을 포함 한다.

② 본 대학교의 학칙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준용된다,

③ 기타 외국인 학생에 관한 제반 운영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8 조(자체평가) ① 자체평가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에 의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대학의 자체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1.]

부 칙(규정 제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과정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94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8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6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7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7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0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자계산과가 정보통신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전자계산과에 소속된 재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과가 전산정보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전산정보처리과에 소속된 재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③ 판매관리과가 마케팅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 칙

종전의 판매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마케팅과 소속으로 본다.

④ 세무회계과가 세무회계정보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세무회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세무회계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⑤ 무역과가 통상정보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무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통상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⑥ 관광영어통역과가 관광영어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광영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영어과 소속으로 본다.

⑦ 관광일어통역과가 관광일어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광일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일어과 소속으로 본다.

⑧ 여성교양과가 사회복지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⑨ 의상디자인과가 패션디자인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의상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패션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84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5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7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과, 전자정보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통신계열 소속으로 본다.

② 전산정보과, 사무자동화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정보계열 소속으로 본다.

③ 산업안전관리과, 건축설비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시스템계열 소속으로 본다.

④ 산업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계열 소속으로 본다.

⑤ 건축과, 실내디자인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조형계열 소속으로 본다.

⑥ 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통상정보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정보계열 소속으로 본다.

⑦ 관광영어과, 관광일어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통역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8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0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산업시스템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산업시스템계열 소속으로 본다.

② 종전의 건축조형계열, 토목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도시건설디자인계열 소속으로 본다.

③ 종전의 산업정보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3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도시건설디자인계열, 경영계열, 경호·스포츠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당해 연도 계열·학과명칭 변경 계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6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5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6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7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② 종전에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에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3.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으로 본다.

4. (학과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4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1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6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36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4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57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6조의 2(전과) ⑤학과 폐지인 경우는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전화를 시행한다.

제17조(재입학) ③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학생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460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4조(교과 이수단위) ③ 교과 이수단위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464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71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7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제50조 제4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20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44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65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7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91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0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61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6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785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0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12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28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호산대학교 총장 ○○○○ ○ ○ ○

학위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계열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호산대학교 총장 ○○○○ ○ ○ ○

(별표 1)

호산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학 과 명	학위명	비 고
간호과	간호전문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경호태권도경영과	경호태권도경영전문학사	
관광항공서비스과	관광전문학사	
관광호텔과	관광전문학사	
노인보건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마케팅경영과	경영전문학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전문학사	
방사선과	보건전문학사	
방송연예연기과	방송예술전문학사	
방송영상광고과	방송디자인전문학사	
병원의료행정과	보건전문학사	
병원행정의료정보과	보건행정전문학사	
보건의료전산과	보건전문학사	
뷰티디자인과	뷰티디자인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소방안전관리과	공업전문학사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전문학사	
실내디자인과	실내건축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자동차과	공업전문학사	
재활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주거환경디자인과	주거환경전문학사	
철도토목과	건설전문학사	
태권도경영과	태권도경영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조리전문학사	

(별표 2)

2017학년도 입학정원

계열구분	학 과 명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 간	야 간	합 계
공학	첨단공학부	소방안전관리전공	90	100
		자동차전공		
		건축전공		
		토목조경전공	10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130	-	130
	물리치료과(3년제)	30	-	30
	방사선과(3년제)	20	-	20
	병원행정의료정보과(3년제)	20	-	20
	호텔외식조리과	40	-	40
인문사회	유아교육과(3년제)	45	-	45
	휴먼복지학부	노인보건복지전공	60	160
		상담복지전공		
		평생교육복지전공	-	
	휴먼케어학부	사회복지전공	75	105
		경영전공		
		관광항공호텔전공	-	
예체능	경호태권도경영과	30	-	30
	뷰티디자인과	40	-	40
	실용음악뮤지컬과	20	-	20
	연기과(3년제)	20	-	20
합 계		620	140	760

2016학년도 입학정원

계열구분	학 과 명	2016학년도 입학정원		
		주 간	야 간	합 계
공학	소방안전관리과	35	-	35
	철도자동차	40	20	60
	항공학부			
	철도토목전공			
자연과학	자동차전공			
	건축전공			
	드론항공전공			
	간호학과(4년제)	130	-	130
	물리치료과(3년제)	30	-	30
인문사회	방사선과(3년제)	20	-	20
	병원의료정보과(3년제)	25	-	25
	호텔외식조리과	35	-	35
	관광항공호텔과	25	-	25
	유아교육과(3년제)	60	-	60
예체능	노인보건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사회복지전공 상담복지전공 재활복지전공 평생교육복지전공	190	120	310
경호태권도경영과				
	뷰티방송연예학부	70	-	70
합 계		690	140	830